

인천국제공항 내 국산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우수 국산캐릭터 판권업체(이하 「캐릭터 업체」)는 인천국제공항 내 국산캐릭터 홍보 등 문화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진흥원」과 「캐릭터 업체」는 인천국제공항 내 국산캐릭터 홍보 등 문화콘텐츠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협약의 내용】 「진흥원」과 「캐릭터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홍보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사업에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적극 협력한다.
2. 국산캐릭터 홍보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3. 예산지원(시설구축, 운영비 등), 「진흥원」과 「캐릭터 업체」, 「한국문화재단」의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캐릭터 업체는

1.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가 비상업적,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2. 국산캐릭터 홍보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3. 「진흥원」과 「캐릭터 업체」의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제3조 【상호협력】 체결 당사자는 인천국제공항 내 국산캐릭터 산업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타 분야에서 상호 논의를 통하여 서로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 【신의 성실의 의무】 「진흥원」과 「캐릭터 업체」는 협약내용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는 상호간 서면의 별도 해지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6조【비밀엄수】 본 협약서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체결 당사자는 이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10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5년 10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주)둘리나라
대표 유미희



(주)디피에스
대표 남진규

(서명)

남진규

(주)로이비주얼
대표 이동우



(주)부즈

대표 김부경

(서명)

(주)부즈클럽

대표 김윤경



(주)아이코닉스

대표 최종일

(서명)

최종일

오로라월드(주)

대표 홍기선



(주)올리브스튜디오

대표 이재희

(서명)

이재희

(주)투바엔

대표 김광용

(서명)

김광용

